

## 참고 1

## 음주운전 방지장치 보조자료

### □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법령 시행일 및 최초 적용일

○ (시행일<sup>2024. 10. 25.</sup>)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,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(법률 제19745호, 2023. 10. 24.) 시행일은 2024. 10. 25.

○ (최초 적용일<sup>2026. 10. 24.</sup>) 2024. 10. 25. 법 시행 즉시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자라도 최소 2년의 면허 결격 기간\*(면허 취득 제한)이 경과해야 하므로, 최초 적용일은 2026. 10. 24.

\* 결격기간: 음주운전 단속 후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

#### ▶ 음주운전 죄종별 운전면허 결격기간

죄종	결격기간
음주 뺑소니, 사망사고	5년
2회 이상 + 교통사고	3년
2회 이상, 음주 교통사고	2년
단순음주(0.08% 이상), 음주 측정불응	1년
무면허 음주운전	1년

### □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

○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  
-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은 약 40%,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여 음주운전 재범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### □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

○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·사고 발생 시 피해 등 위법 행위와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1~5년 규정

-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(예: 2년)은 음주운전 결격기간(예: 2년)과 동일

예시	
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2026년 1월 1일,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되고, <b>결격기간 2년</b> 처분을 받은 경우	
<b>운전면허 취득 불가 기간 (결격기간)</b>	2026. 1. 1. ~ 2027. 12. 31. (2년)
<b>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</b>	2028. 1. 1. ~ 2029. 12. 31.까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 2년간 운전 가능
※ 만약 2029. 10. 1. 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시 2029. 12. 31.까지(3개월)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면허로 운전하고, <b>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 경과시(2029. 12. 31.) 일반 면허로 자동 전환</b>	

□ **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**

-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용은 약 300만 원 추정
- 구매 외 대여(렌탈)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정책 협의 중

□ **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형벌 및 행정처분**

<b>미설치 운전</b>	(형벌) 1년↓징역 또는 3백만원↓ 벌금(도교법 제152조 제1호의2) (행정처분)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(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2호)
<b>무등록 운전</b>	(행정처분)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(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1호)
<b>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·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</b>	(형벌) 3년↓징역 또는 3천만원↓ 벌금(도교법 제148조의3 제1항)
<b>해체·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</b>	(형벌) 3년↓징역 또는 3천만원↓ 벌금(도교법 제148조의3 제2항) (행정처분)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(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3호)
<b>대신 호흡 등 부정한 방법 운전</b>	(형벌) 3년↓징역 또는 3천만원↓ 벌금(도교법 제148조의3 제3항)
<b>정기검사 미 실시, 기록 미 제출</b>	(과태료) 10만 원에서 500만 원(도교법 제160조 제1항 제9호)

## 참고 2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결격(정지)기간

### □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준 변화

구 분		'윤창호법'('19. 6. 25. 시행)		'윤창호법' 위헌* 보완('23. 4. 4. 시행)		
단순 음주 (1회)	0.03 ~ 0.05%	<b>0.03 ~</b> 0.08%	징역 1년 이하, 벌금 500만원 이하	징역 1년 이하, 벌금 500만원 이하		
	0.05 ~ 0.1%	0.08 ~ 0.2%	징역 1년~2년, 벌금 500만원 ~1천만원	징역 1년~2년, 벌금 500만원 ~1천만원		
	0.1 ~ 0.2%	0.2% 이상	징역 2년~5년, 벌금 1천만원 ~2천만원	징역 2년~5년, 벌금 1천만원 ~2천만원		
	0.2% 이상	<b>단순음주 (2회 이상)</b>	징역 2년~5년, 벌금 1천만원 ~2천만원	<b>단순 음주 (10년 내 2회 이상)</b>	0.03 ~ 0.2%	징역 1년~5년, 벌금 500만원 ~2천만원
단순음주(2회)	0.2% 이상				징역 2년~6년, 벌금 1천만원~3천만원	
측정거부 측정방해* (* '25. 6. 4. 시행)		징역 1년~5년, 벌금 500만원~2천만원		1회		징역 1년~5년, 벌금 500만원 ~2천만원
				<b>10년 내 2회 이상</b>		징역 1년~6년, 벌금 500만원~3천만원

\* 소위 윤창호법(제148조의2 제1항)은 위반행위와 재범행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(헌법재판소 2021. 11. 25.자 2019헌바446 결정(전합))

### □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결격(정지) 기간

구분	행정처분	(결격)기간	해당 조항
혈중알코올농도 (0.03% 이상 ~ 0.08% 미만)	면허정지 (벌점 100점)	1년 이하	제93조제1항제1호
음주·거부·방해 뺑소니 / 사망사고	면허취소	5년	제82조제2항제3호
상습(2회)음주·거부·방해 교통사고	면허취소	3년	제82조제2항제5호
음주·거부·방해 상습(2회) / 교통사고	면허취소	2년	제82조제2항제6호
단순 음주(0.08% 이상) ·거부·방해	면허취소	1년	제82조제2항제7호

**참고 3**

**약물운전 보조자료**

□ **타액을 이용한 약물검사 간이시약기 (Oraltox, 미국)**

- 구강 내 검체(타액)를 채취하여 약물 10종\* 복용 여부를 확인  
(소요시간: 약 8분, 개당 단가: 45,000원)



- \* 암페타민, 대마, 코카인, 아편, 메스암페타민, 부프레놀핀, 벤조다이제핀, 펜타닐, 옥시코돈, 트라마돌

□ **약물운전에 대한 측정 불응을 처벌하는 해외 사례**

- 스페인, 뉴질랜드, 호주(빅토리아주) 등에서 약물운전 검사 불응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

▶ **약물운전 검사불응죄를 두는 해외 사례**

- 스페인 : (형법 제383조) 약물 검사를 거부한 운전자는 6월 ~ 1년↓ 징역형 및 1년 ~ 4년의 운전 금지
- 뉴질랜드 : 혈액·약물장애 검사 거부 횟수에 따라 차등 처벌  
(1·2회 위반)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\$4,500의 벌금  
(3회 이상 위반) 최대 2년 징역 또는 \$6,000달러 벌금
- 호주(빅토리아 주) : 검사 종류에 따라 벌점 및 징역형 부과  
(타액 검사 거부) 최대 120점 벌점  
(기타 약물 검사 거부) 최대 180점 벌점 또는 18개월 징역형

□ **[상습] 약물운전 및 약물운전 측정불응 처벌**

구분	개정 전		현행	
	1회 위반	2회 이상 위반(상습)	1회 위반	2회 이상 위반(상습)
측정불응	규정 없음	규정 없음	5년 이하 징역 / 2천만원 이하	1년 ~ 6년 징역 / 500만원 ~ 3천만원
약물운전	3년 이하 징역 / 1천만원 이하	규정 없음	5년 이하 징역 / 2천만원 이하	2년 ~ 6년 징역 / 1천만원 ~ 3천만원

## 참고 4

## 운전 면허 갱신기간

### □ 과거 운전 면허 갱신기간(일괄 1. 1.부터 12. 31.까지)의 문제점

- 연말에 적성갱신 신청이 집중\*되는 문제가 발생
  - △ 운전면허 갱신 대기 시간이 증가(2月(8분) △12月(141분), 약 18배)하여 국민 불편이 가중 △ 관련 기관(한국도로교통공단)의 업무 부담 가중\* 및 비효율성으로 행정비용 증가, 서비스 질 저하

### □ 운전면허 갱신기간

- (개정 전)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합격일· 이전 갱신일부터 10년 (65세 이상 5년, 75세 이상 3년 등)이 되는 해의 **1. 1.부터 12. 31.**
- (현행)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합격일· 이전 갱신일부터 10년 (65세 이상 5년, 75세 이상 3년 등)이 되는 해의 **생일 이후 6개월**  
※ 갱신기간 총 1년은 변함 없음

운전면허 갱신기간(예시)	
1975년 4월 17일생인 홍길동 씨(1종 보통면허 소지)가 2016년 2월 2일에 적성검사를 받아 이전 갱신일로부터 10년 후인 2026년에 갱신 대상이 된 경우	
개정 전	2026. 1. 1. ~ 2026. 12. 31.
현행	2025. 10. 17. ~ 2026. 10. 17.